



# 비영리 활동과 예술영역의 교집합 찾기 (2회)

주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함께 읽기

‘비영리활동과 예술영역의 교집합 찾기 2회차 모임’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함께 읽기’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비영리단체라는 개념과 많이 달라 상당히 혼돈이 왔었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배움이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Non-Profit Organization(NPO)]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이들 조직이나 기관이 소유주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학교,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연구기관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NGO(비정부단체)와 거의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9년말 국회를 통과해 2000년 4월부터 시행중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재정을 계기로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다.



비영리단체에 대해 다시한번 쉽게 설명하자면, 주식회사의 경우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지만 비영리 단체는 그 수익을 모두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만 쓴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출자자, 또는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선단체, 노조, 학교, 병원(법인 형태의 대형 병원), 동호회, 동창회, 단체급식소 등이 비영리 단체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단체에는 공익(公益, 사회 전체의 이익)성을 갖는 것과 공익(共益, 공동의 이익)성을 갖는 것, 2종류가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사회 전체의 이익(公益)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公益 · 非營利)**

조직 예: 사회적지원활동 단체, 학교 · 병원 · 간호시설 · 직업훈련시설 · 묘지 등의  
운영단체 등

법인 예: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훈련법인, 종교법인 등

단, 실질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 · 사업자단체 등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주장하여 재단법인 · 사단법인 등으로 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共益)을 목적으로 하는단체 (共益 · 非營利)**

조직 예: 동창회, 동호회, 사업자단체 등

법인 예: 중간법인(中間法人), 의료법인, 사업조합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非營利民間團體支援法]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0. 1. 12, 법률 제6118호).

비영리 민간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을 분배하지 않을 것
- ③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이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 ④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⑤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의 실적이 있을 것
-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처음에 비영리단체라고 하여 영리추구만 하지 않고 단체를 만들면, 몇 명이 되던 상관없이 없을꺼라 생각했으나, 비영리 단체의 핵심 조건중 하나가 바로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아직도 많은 수의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임의단체’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상시 구성원에 대해 혼란이 왔었는데요, 왜냐하면 상시 100명정도의 규모라면 회사로 쳐도 상당히 큰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도 그정도 되지 못할텐데, 그렇다면 비영리 단체는 그렇게 커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상시 구성원이라 함은, 단체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는 분들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참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고나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의문점이 해소되었습니다.

왜 상시 100명이상이어야 하는가? 단체를 이끌려면 어떻게든 돈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회비를 한사람이 만원씩만 낸다해도, 100명은 되어야 100만원이 됩니다. 최고한의 단체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무작업, 공간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려면 이정도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는 뜻이라 합니다.

이상 비영리단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사업 모델 구상 및 현실화가능성에 대한 토론 및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